2019년 4차
시민 옴부즈만 정례회의 결과

일 시	2019년 12월 3일 (화) 11:00
장 소	청사 16층 회의실
참 석 자	- **옴부즈만 (5명)** : 구자필, 최병철, 김대호, 이정수, 신종호[신규] ※ 불참 옴부즈만 4명은 회의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 공유 - **공 단 (6명)** : 상임감사, 감사실장, 부패방지팀장, 경영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6급 박상민
회의순서	- 신규 옴부즈만 위촉 행사 - 4/4분기 감사실 주요활동 보고 - 공단 중장기 감사 계획수립에 대한 제언 - 2019년 감사 업무 및 2020년 감사업무 논의
회의요지	□ 2019년도 4/4분기 주요활동 보고 □ 중장기 전략감사계획 잠정(안) 보고 1) 공단의 감사환경 진단 2) 공단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진단 3) 중장기전략감사 추진계획 4) 향후 과정 □ 2020 감사실 주요사업계획(안) 보고 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획득 2) 행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감사업무 개선 3)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처분 공정성 확보 4)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5) 우수 민원서비스 발굴로 민원서비스 제고 6) 안전과 청렴을 위한 현장중심 상시감사제 운영

회의내용	감사활동 관련	〈상임감사〉 ㅇ 공단에 상임감사로 취임해 일한 지 만 1년이 되었다. 1년 간 좋은 의견 및 말씀 주신 점 감사인사 드린다. 우리 공단은 공조직이긴 하나 공조직의 전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능동적이며 변화에 대처 가능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많은 가르침 달라. 〈최병철 옴부즈만〉 ㅇ 상임감사님 말씀에 감사드린다. 올해 활동을 하면서 중장기 전략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간 진행사항이 있나? → 지속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임. 특히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및 조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 실태를 개선하여 '공공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감사(종합, 재무, 성과, 복무, 일상, 특정)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특성에 맞는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중에 공단에서 시작하여 다른 기관에 전파된 '청렴 콘서트'를 칭찬하고 싶다. 본인은 3번 참석하여 타 기관 청렴콘서트를 모두 관람했는데 회차마다 내용이 풍성해지고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직접 행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으며 청렴도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음. 내년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관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청렴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정주 옴부즈만〉 ㅇ 한 해 동안 감사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향후 옴부즈만 정례회의가 더 풍성해 지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연초에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문기사를 검색하거나 국정과제 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요 이슈가 기본계획 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옴부즈만 정례회의에 부의하여 논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옴부즈만의 역할 및 방향을 설정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본다. →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공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음

<table>
<tr><td rowspan="2">회의내용</td><td>옴부즈만 활동 관련</td><td colspan="2">

〈신종호 옴부즈만〉

○ 훌륭하신 여러 옴부즈만 위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장애인권분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향후 공단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김대호 옴부즈만〉

○ 1년 간 6번의 여러 위원회에 참석했다. 적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토목전문가지만 주로 '터널 및 지하차도 LED등기구 제품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주 및 계약이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구자필 옴부즈만〉

○ '작은갑질 분야 근절 개선 공감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표준화된 반장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마련 시 반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반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장의 월권행위 및 반원의 지시불이행에 대한 패널티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장 선임에 있어서 반원 규모가 사업소마다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반원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출방식에 의한 임명도 필요하다.

</td></tr>
<tr><td colspan="2">조치사항
(사유기재)</td><td>제도개선 권고사항</td><td>•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2건 완료)</td></tr>
<tr><td colspan="2"></td><td>감사 권고사항</td><td>• 감사사각지대(작은갑질 분야) 근절 감사 완료(12.5.)</td></tr>
<tr><td colspan="2"></td><td>특 이 사 항</td><td>-</td></tr>
<tr><td colspan="2">향후계획</td><td colspan="2">중장기 전략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계속 등</td></tr>
<tr><td colspan="2">회의사진</td><td colspan="2">

신규 옴부즈만 위촉

안건보고</td></tr>
</table>